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시설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입소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시설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시설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이용료 등 비용 변경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계약준수사항)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시설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체결 시 시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제4조(신원 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①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입소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시설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4. 입소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6.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5조(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그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소자(보호자)에게 신원인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입소자(보호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시설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수납) ① 본 시설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20%(본인부담액)를 부담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를 부담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④ 이용료 수납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입소자(보호자)에게 우편,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하고 매월 20일까지 시설명의로 계좌입금으로 수납을 한다.

⑤ 비용면제 및 감면대상자라도 행사비, 식대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1. 시설 측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로 인해 이용료수납 후 이용 불가 승인 통보를

하였을 경우

2.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심하여 더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의 일일 급여비용 및 이용 한도,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다(2025년 기준).

등급	1일 단가	전체 이용 한도	본인 부담금		
		31일	일반수급자	40% 경감수급자	60% 경감수급자
			31일	31일	31일
1등급	90,450	2,803,950	560,790	336,474	224,316
2등급	83,910	2,601,210	520,242	312,145	208,097
3등급	79,240	2,456,440	491,288	294,773	196,515
4등급	79,240	2,456,440	491,288	294,773	196,515
5등급	79,240	2,456,440	491,288	294,773	196,515

② 요양급여 외 시설의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및 실제 소요비용만 산정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 불가
- 식비 : 1일 3식 제공(월 평균 부담 비용 : 31일×10,500원=325,500원)
- 간식비 : 1일 1회 제공 기준(1회 1,000원 : 월 평균 부담 비용 : 31일×1회×1,000원=31,000원)
- 상급침실 추가비용 : 2인실 31×5,000원=155,000원
- 기저귀 :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수납 없음(기초생활수급권자 보건소에서 수령)
- 이·미용비 : 수급자 요구에 따라 이·미용사 초빙하여 받는 서비스는 비급여 가능 .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 손·발톱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 불가

③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할 경우 실비 수납하나 실비 이외에 추가 비용 수납 불가
-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각종 프로그램 비용 : 프로그램 운영은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하지만 수급자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 대상으로 제공할 경우 수급자가 실비 부담

제8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방법 및 절차는 상호협의를 한 후 재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1. 입소비용 기준 : 이용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은 등급변경과 요양보험수가의 변경에 따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1,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처리한다.
3. 시설은 물가 변동 즉, 급식비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변동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개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자 및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①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의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 ② 이용자(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표준 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
6.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10조(계약의 해제) 계약 종결은 입소자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지만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요양보호사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